



# 법령·지침 등

##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증개정령

2003.4.22 대통령령 제17972호

###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공동주택의 층간 소음기준을 정하는 등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가. 공동주택의 층간 소음규제와 관련하여 종전에는 구체적 기준을 두지 아니하였던 것을, 앞으로는 경량충격음(輕量衝擊音)은 58데시벨 이하, 중량충격음(重量衝擊音)은 50데시벨 이하로 정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이 그 기준을 충족하는 표준 바닥구조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중소주택건설업자들의 바닥구조 개발 부담을 줄이도록 함(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부칙 제4조).

나.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난간의 높이를 110센티미터 이상에서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변경하고, 난간의 설치위치에 따라 10센티미터·15센티미터 또는 30센티미터 이하로 상이하던 난간 간설의 배치간격을 난간의 설치위치와 관계없이 10센티미터 이하로 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 안전사고에 대비하도록 함(영 제18조제2항).

다. 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건설하는 경로당(종전의 노인정)의 최소설치면적을 15제곱미터에서 20

제곱미터로 상향조정함으로써 노인복지법(老人福祉法)에서 정하는 경로당의 신고기준과 일치시킴과 아울러 노인여가 복지시설의 기능을 확보하도록 함(영 제55조제1항).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주택단지에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광장 및 공원용지의 면적은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산정을 위한 대지면적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9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노인정"을 "경로당"으로 한다.

제1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공동주택의 바닥은 각 층간 바닥충격음이 경량충격음(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은 58데시벨 이하, 중량충격음(비교적 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은 50데시벨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바닥충격음의 측정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의한다.

④ 건설교통부장관은 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바닥충격음기준을 충족하는 표준바닥구조 및 바닥충격음 차단성능등급을 각각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8조제2항제1호중 "110센티미터"를 "120센티미터"로 하고, 동 항제2호 단서를 삭제한다.

제55조의 제목 "(노인정등)"을 "(경로당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중 "노인정"을 "경로당"으로 한다.

- ① 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20제곱미터에 150세대를 넘는 매 세대당 0.1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거실 또는 휴게실의 면적을 말한다) 이상의 경로당을 설치하여야 한다.

####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바닥충격음의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개정규정은 동 규정의 시행후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주택건설사업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3조 (난간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항제1호 · 제2호 및 제55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법 제 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주택건설사업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4조 (규제의 존속기한) ①제14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동 규정의 시행일부터 5년간 효력을 가진다.  
② 제14조의 개정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요청을 거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이 연장되지 아니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 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 투기과열지구지정

2003. 4. 29. 건설교통부공고 제2003-95호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 5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 공고합니다.

#### 지정지역

○ 대구광역시 서구 우성구(노은2택지개발지구)의 전지역

※ 노은 2택지개발지구는 2003년 2월 5일 투기과열지구로기 지정

○ 충청남도 천안시 불당동, 백석동, 쌍용동의 전지역

※ 불당동, 백석동, 쌍용동은 행정동으로는 쌍용1동, 쌍용2동에 해당

지정기간 : 2003년 4월 29일 지정해제시까지 지정효력

○ 주상복합건물 중 주택또는 오피스텔의 분양시 입주자 공개모집

○ 과거 5년내 당첨사실이 있거나 2주택 이상을 소유하는 세대에 속한자 및 2003년 9월 5일 이후 청약예금 부금에 가입한 자중 세대주가 아닌자에 대한 청약 1순위자로 제한

○ 주택의 분양권은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중도금을 2회이상 납부하고 주택공급계약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까지 전매금지

○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및 85m<sup>2</sup>이하 민영주택은 입주자 저축가입 제 1순위자로서 만35세 이상이고 5년이상 무주택세대주인 자에게 우선공급

○ 지역조합 조합원의 선착순 모집금지

효력발생시기 : 이 공고문은 공고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